

매뉴얼

대금지급 약정서 작성요령

세메스 지원그룹

2020.12.09 최종수정

대금지급 약정서

하나/신한/기업은행 外 불가능

[세메스] 대금지급약정서



[세메스]대금지급
약정서

약정을 체결한
은행 명 기재
(하나/신한/기업중)

법인명판 +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와 일치)

사 용 인 감 계		대금지급 약정서	
사 용 인 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목적물의 대금지급 및 기타 거래상 발생한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상 호 :	20	제 1 조 (적용범위)	
사업자등록번호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대금채권 등 채권의 종류 및 금액에 상관없이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우편번호 :		② 본 약정서는 대금 지불에 관련한 다른 약정서보다 우선 적용되며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래기본계약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주 소 :		제 2 조 (대금결제업무약정 및 통보)	
대 표 자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_____은행에 수급사업자 명의로 하기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이하 '전자 방식외상매대'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 동반성장론 / 기업은행: IBK 상생결제론	
법인등록번호 :		② 수급사업자는 전항의 전자방식외상매대를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전화번호 :		③ 수급사업자는 결제계좌 및 업제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FAX No. :		제 3 조 (납품대금의 지급)	
은 행 명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제조건에 의하여 전자방식외상매대 거래로 지급한다.	
지 점 :		1) 대금결제일자 ⇒ 모든 금액 - 1일 ~ 15일까지 승인된 세금계산서 27일 결제 16일 ~ 말일까지 승인된 세금계산서 익월 12일 결제	
계좌번호 :		2) 대금지급조건 ⇒ 500만원 미만 - 결제일로부터 1일 만기 ⇒ 500만원 이상 - 마감일(15일, 말일)로부터 43일 만기 대기업 대금지급일로부터 90일 만기	
사 용 인 감 계		② 대금결제일(만기일포함)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에 결제(지급)한다.	
통 장 인 감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 2 조 3항의 통보를 받기 전, 종전의 총지사항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대금지급의 유예)
① 수급사업자는 제 2 조에 따른 _____은행에 전자방식외상매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유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불량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완성품을 납입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한다.

제 5 조 (약정의 기간)
① 제 7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은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하여 그 기간 동안 유효하며, 거래기본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와 같이 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단,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기본계약에 기초한 개별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본 약정서는 독립하여 유효하다.
② 양 당사자간에 거래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아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6 조 (약정의 변경)
이 약정은 상호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약정의 해지)
①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은 서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본 약정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 (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9 조 (거래기본계약과의 관계)
거래기본계약과 본 약정서의 내용이 해석상 충돌할 경우 본 약정서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본 약정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5길 77
세메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창 진

(인) (인)

법인인감 (인)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개인)인감 증명서
3. 결제계좌 통장 사본
4. 은행별 가입한 동반외상매대 약정서

사용인감 사용
희망 시 날인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

당좌인감
(=통장사본과 일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312-81-13969

법인명(단체명) : 세메스(주)
대표자 : KIM DOUGLAS YONG SHIK

제업연월일 : 1983년 02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61511-0011795
사업장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사업의종류 : 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무동선 임대

본국사유 : 정정

사업자등록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 부 {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자우편주소 :

2016년 03월 29일
천안세무서장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번호 : 161511-0011795

상호 : 세메스주식회사
본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대표이사 박정중국민권익직 (1957년 1월 3일생)

관할공기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 발행공기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6월 0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천안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본서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f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페이지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CAG2-KCR0-DYR4
200075302917410150006110521160181E88DC8FF819740303 10 - 1/1 -

• 통장사본

세메스(주) 이자원씨 하나은행
계좌번호 604-005531-00504
과목 MMDA(기업) 수취클러스

통장발행일 2015년 10월 19일
통장발행점 (0600)천안두정금융
계좌개설일 1997년 08월 12일
계좌개설점 (0600)천안두정금융
개설점 TEL 041)621-1111

인감 하나은행

서명란과 은행거래인행시 '하나은행'에 서명하시면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명으로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장구에서 서명하여야 하며, 장구직원에게 본인확인요구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통장은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애당상품별 거래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저의 은행 영업장에 비치된 약관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거래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셨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저의 은행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가계부통장 주요 서비스
• 가계부 기능: 입출금 내역 및 월간 입출금 합계 금액을 자동 인자로 드립니다.

#62 이월개발행
특이사항 인감사용
자동이체 및 서비스 내용
인터넷출금계좌 지로자동이체
F/출금이체 CMS자동이체

내원민국정부
인자세
100원
남원세무서장
신용인 2016년 06월 04일

KEB하나은행 고객센터 상담/조회 TEL 1599-1111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원본 제출

- 은행 약정 가입한 계좌의 사본
(하나/신한/기업 중)

▶ 판매기업등록 결과 확인서

Guide

판매기업등록결과 확인서는 해당 업체가 은행 약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증빙입니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따라 확인서의 양식은 상이하며, 인터넷 뱅킹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2장 모두 제출이 되어야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전화번호	
약정상품	동반성장론(일반)
관리점	천안두정금융센터
사업자번호	312-81-13969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종류

[기업은행] / 2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전자결제약정구분 : IBK상생결제협력기업서비스
대표자명	전자결제약정구분 : 세메스서비스
결제계좌번호	
약정일자	2016-07-04
약정상태	활동

은행 약정 등록 방법 / 안내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상품명	동반성장론(일반)	동반성장론	IBK상생결제론
은행 담당자	이민기 대리	김성근 대리	유시찬 대리
연락처	041-621-1111(306)	041-563-6340	02-2046-1010
자료	 하나은행1  하나은행2	 신한은행	 기업은행